# 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, 타법개정]
행정안전부 (자치분권제도과-지방자치법 총괄) 044-205-3307
행정안전부 (선거의회과-지방의회, 제30~92조) 044-205-3373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,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,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**제23조(규칙)*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**부칙** <제16057호, 2018. 12. 24.>(문화재보호법)

**제1조**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생략

**제3조**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
⑦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5호다목 중 “지정 · 보존 및 관리”를 “지정 · 등록 · 보존 및 관리”로 한다.

⑧ 및 ⑨ 생략